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13
----------	-----

제출년월일 : '99.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개정 ('95. 6. 5)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 시(구). 읍. 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행의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91. 4. 15)는 이를 폐지한다

※ 폐지되는 조항

가. 제1조(목적) ~ 제9조(시행세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호적선례요지집 : 별첨

다. 기타 :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사본 - 별첨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범 령 발 취

□ 호적법

제130조 (과태료)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1조 (과태료) 시, 읍, 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2조의 2 (과태료의 부과 징수) 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읍, 면의 장(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 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시, 읍, 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읍, 면의 장은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 읍, 면의 장은 지체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과태료의부과) ① 법 제132조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 읍. 면의 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 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 시장.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⑤ 삭제

⑥ 시. 읍. 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 읍. 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42호 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지체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거소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별 표]

과태료부과기준

해 태 기 간	과 태 료	
	제130조위반	제131조위반
7일미만	10,000원	20,000원
7일이상 1월미만	20,000원	40,000원
1월이상 3월미만	30,000원	60,000원
3월이상 6월미만	40,000원	80,000원
6월이상	50,000원	100,000원

사업행정간행물등록번호
100200-3201-67-9623

호적선례요지집

제 3 권

(1992. 7~1996. 8)

법원행정처

**648. 비동거친족이 사망신고기간이 지나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329항 참조

**649.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자치
조례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 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학력·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행의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에 의하여 해태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6. 3. 14. 법정 3202-70)

참조조문: 법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의 2, 규칙 제52조

650. 시(구)·읍·면의 장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143항 참조

651. 재외국민의 출생신고와 과태료 부과 여부

184항 참조

●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1991 . 4 . 15]
[조례 제1352호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이하 "신고"라 한다) 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①읍면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이민, 유학, 취업등에 의한 외국 거주 및 천재지변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자
3. 기타 읍면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부과 등) ①읍면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이유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②읍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39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문을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읍면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 처리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결정자료부와 규칙 제51호서식의 과태료 징수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읍면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징수) 읍면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해태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 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제7조(납부독촉) 읍면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132조의2제2항 및 규칙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32조의2제4항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